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산화 아연		1314-13-2	KE-35565	80 - 95
보고수준보다 낮은 기타성분				5 - 2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을 문지르지 말 것. 물로 헹굴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내시오.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알려지지 않음.
일반적인 조치사항	불편함을 느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가능하면 라벨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알려지지 않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예방조치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 분무를 사용할 것.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여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가 누설 또는 누출을 방지할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잠금 상태로 보관할 것.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산화 아연 (CAS 1314-13-2)	STEL - 단기노출기준	10 mg/m3	호흡성 분율.
	TWA	5 mg/m3	
		2 mg/m3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산화 아연 (CAS 1314-13-2)	STEL - 단기노출기준	10 mg/m3	호흡성 분율.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TWA	2 mg/m3	호흡성 분율.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공학 측정만으로 분진 입자의 농도를 OEL 미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연마, 절단, 또는 사용되어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 적당한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하여 노출을 권장 노출한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적절한 호흡기 보호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		
o 눈 보호	자료없음.		
o 손 보호	취급 중 금속에 베이고 또 피부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o 신체 보호	불 침투성 앞치마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위생대책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고체.		
형태	고체.		
색	암록색.		
나. 냄새	없음.		
다. 냄새 역치	해당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해당없음.		
어는점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사. 인화점	해당없음.		
아. 증발 속도	해당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알려지지 않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해당없음.		
燃焼範圍 - 下限 (%) 溫度	해당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해당없음.		
燃焼範圍 - 上限 (%) 溫度	해당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해당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온도	해당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해당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온도	해당없음.		
카. 증기압	해당없음.		
타. 용해도			
용해도(물)	불용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해당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해당없음.		
더. 분해 온도	해당없음.		
러. 점도	해당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A. UN number Not applicable.
-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Class Not applicable.
 - Subsidiary risk -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 E. Environmental hazards No.
-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IMDG

- A. UN number Not applicable.
- B. UN proper shipping name Not applicable.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Class Not applicable.
 - Subsidiary risk -
- D. Packing group Not applicable.
- E. Environmental hazards
 - Marine pollutant No.
 - EmS Not applicable.
-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Not applicable.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산화 아연 (CAS 1314-13-2)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MINERAL DUST (CAS 1314-13-2)

분진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OTHER MINERAL DUST (CAS 1314-13-2)

분진

노출기준설정물질

산화 아연 (CAS 1314-13-2)

나.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관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산화 아연 (CAS 1314-13-2)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산화 아연 (CAS 1314-13-2)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참고문헌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한국.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별표 2 및 3, 2005년 12월 28일)

한국. OEL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 고시 제1986-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까지의 개정본, 2013년 8월 14일)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확신된다. 마테리온(Materion)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보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마테리온(Materion)은 이 정보와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조건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다. 사용자는 특정한 용도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모든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